Ⅳ

고용창출 지원사업

1. 공통사항
2. 사업실시
3. 지원금 등의 지급
4. 성장유망 업종
5. 국내복귀기업
6. 지역전략사업
7. 전문인력채용 지원
<참고> '성장유망업종'의 지원대상

Ⅳ 고용창출 지원사업

1. 공통사항

- 목 적 :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사업주체 :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 국비는 사업비로만 사용
- 사업 허용한도 : 자치단체별 가내시 금액의 20%이내
-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직접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기관
- 사업수행기관은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 사업 참여·신청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 지원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예산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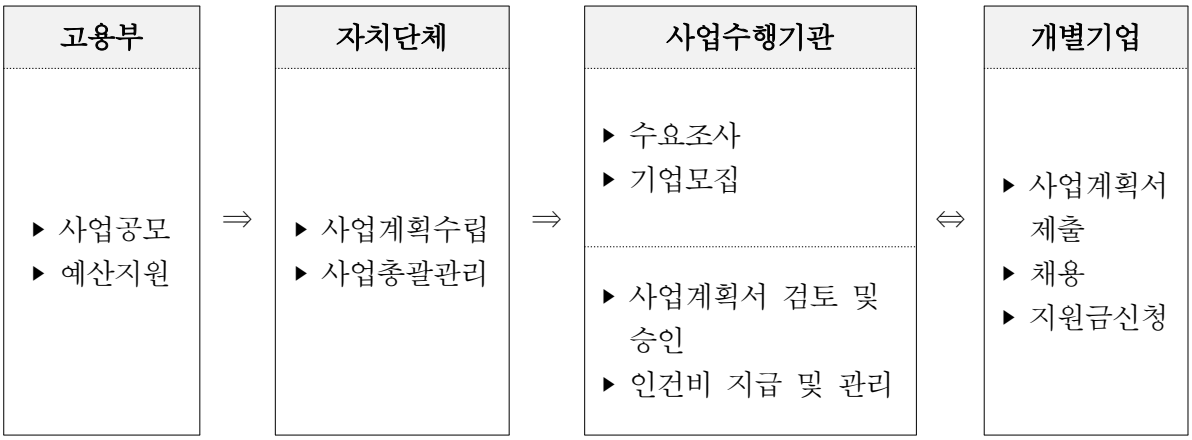

- 지원기간 :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개인별 지원요건에 대한 지원은 최대 1년간 지원가능

  ※ '16년에 약정 체결한 경우 ~'18년 12월 31일 까지 지원가능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분야 :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기업,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채용

- 지원금 등 신청시 사업수행기관 확인 서류

  - 지원금 등 신청서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 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

- 지원금 신청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사업별 필요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 함 (서식10, 11)

2. 사업실시

- 사업주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 사업주는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함.

  - 노사간의 협의(합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도입 등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사업수행기관의 지원기간(3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는 관할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주는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 변경신청을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근로자 증감 산정 시 근로자 수는 월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하 같음)

3. 지원금 등의 지급

- 사업수행 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지원함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급됨

-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 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제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 이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제외함

가.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다.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⑧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지원금 수급기한 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별표 2 참조)

- 감원방지기간 적용사업 : 성장유망 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채용지원

<별표 1>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2.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⑤신용회복지원자 ⑥결혼이민자 ⑦위기청소년 ⑧여성가장 ⑨건설일용직 ⑩장애인 ⑪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⑫니트(NEET)족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①시험고용 프로그램 ②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④직업재활 프로그램
4.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수자
5.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6.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7. 「자활근로」이수자
8. 「희망리본 프로젝트」이수자

<별표 2>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고용조정 여 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①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4. 성장유망 업종

● 신성장동력산업 및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 신성장동력산업(세부 지원대상 '참고' 참조)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⑯ 녹색금융 ⑰ MICE·융합관광

- 5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에 해당하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분 야	지원대상 인력
① 보건의료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③ S/W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④ 금 융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광·콘텐츠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지원요건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360만원(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5. 국내복귀기업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지원요건

- “사업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근로자 고용기간)된 이후 매월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함)가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

❖ (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 ’15. 3. 15.일인 경우

<table>
<tr><th>11월</th><th>12월</th><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6개월 이후</th></tr>
<tr><td colspan="3">사업시행전 월평균 근로자수</td><td>계획서 제출</td><td>3.15 승인통보 받음</td><td colspan="6">1차 지원금_사업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3개월 이상 고용유지)</td><td>(1차 지원금)</td></tr>
</table>

● 지원기준 및 한도

- (증가근로자수 산정)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증가근로자 판단)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함

- (지원기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원인원을 계산 함에 있어 지원인원 1명 이상인 경우 지급함

※ 예시) 증가된 근로자가 1.56명일 경우 1명 지원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지원대상 한도는 매 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6. 지역전략사업

● 지원대상

- 지역적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 또는 업종 (세부 지원대상 추후 통보)과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해당하는 필요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고용노동부가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기 선정된 사업(별첨 참조)

- 해당 직종 관련 여부는 근로계약서, 기업의 업무분장, 채용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으로 판단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360만원(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우대지원

- 지역전략산업 관련 일자리사업 발굴 시 가점부여, 최장지원기간 연장(최대3년) 등 우대지원

  ※ 세부지원 대상 지역전략산업: 관계부처 합동 선정 목록 추후 통보

[별첨]

『 기 선정된 특화사업 』

□ 경기도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섬유패션산업 (양주·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 (디자이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인력

□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금속가공산업 (대덕·유성구)	243. 강주물 주조업 259.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및 금속파스터 및 나사제품 제조업 29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및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시제품엔지니어

□ 대구광역시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안경산업 (대구시 북구)	273. 안경, 광학기기 제조 46800 상품종합도매업(무역) 46105 상품종합(무역)중개업	- 산업·디자이너 - 기술인력(3D설계, CNC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 기획 인력

□ 전라남도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생물산업 (나주·목포)	107. 기타식품제조업	- 식품가공기술직(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직

7. 전문인력채용 지원

7-1 사업개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7-2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7-3 지원요건

-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① 경력요건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단,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부서)보유 기업에서 경력직, 석박사 채용시 제외)

② 자격요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안전·보건관리자'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마.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개인정보관리사(CPPG)

③ 학력요건

가.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나.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다.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할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근무분야와 연관성 있는 학위 소지자)

- 전문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지원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 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7-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을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7-5 사업시행 관련사항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3년~2015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이 지침(2016년)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면(2012년 이전 지원)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하여 지원함

-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전문인력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건축설계·감리,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업장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별표 1>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참 고 '성장유망업종'의 지원대상

◆ ①신성장동력 산업 '개념'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표준산업분류표에 속하고 ③대표품목 또는 HS코드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HS Code(품목분류):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 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품목분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 인증제도, 지정기준 등 법정제도 등 '기타사항'을 참조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역량 가능성 등 종합하여 지원대상기업 선정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 **개념** :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지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

□ **대표품목** :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41.40.9010(광전도 셀), 8541.40.9020(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

□ **기타사항**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 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1-2. 연료전지

□ **개념** :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대표품목** : 건물용PEMFC, 분산발전용MCFC, 건물용/분산발전용SOFC, IGFC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620(축전지 침적물), 2824(이산화연, PbO2), 2825 (수산화니켈, 산화제이니켈), 78(연- 안티모니 합금), 8506(일차전지), 8507(축전지),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 **기타사항** : '태양전지' 참조

1-3. 해양바이오

□ **개념** : 해조류,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Biomass to Liquid)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04.10.0000(수소),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13.0000 (부탄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42.00(기타 유기화합물), 8479(발효기, 압착기), 8419(증류기), 8421(여과기)

□ **기타사항** : '태양전지' 참조

1-4. 해양에너지

□ **개념** :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 구조물을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3111(선박 건조업), D3530(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표품목** : 조력발전(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수문, 방조제, 통선갑문), 조류발전(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지지구조물), 파력발전(파력변환 운동부유체, 유압장치, 터빈, 전력 제어기, 발전기, 변압기), 해수온도차(해수 취·배수관,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 온도차발전장치,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10(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3(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501(발전기와 전동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4(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37(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8907(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 **기타사항** : '태양전지' 참조

1-5. 폐자원에너지

□ **개념** :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21(산업용 가스제조업), C33999(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E3701(하수 및 폐수처리업), E3702(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210(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30(건설폐기물처리업), F41224(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M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표품목** : 고분자폐자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 매체(energy carrier) 생산,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기타사항**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매립가스 자원화, 소각여열 활용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6 신재생에너지-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 **개념** : 비식량 섬유질계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지작물,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 및 가축분뇨 로부터 자원화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9(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 농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기타 중간산물, 고효율 당화효소, 가축분뇨 유래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바이오연료 생산공정 플랜트, 고효율 발효공정 플랜트, 가축분뇨 연료 생산용 플랜트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15류 (동식물성유지), 1518(동식물성유지-비식용), 2905(알코올), 8479(발효기), 8421(여과기), 8404.10(보일러용 부속기기), 8501(전동기와 발전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기타사항**

○ 농산업 친환경 바이오매스 작물(유채, 갈대 등)을 생산하는 영농단체 또는 기업

○ 바이오알코올, 바이오디젤 생산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가축분뇨 및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장치제조, 시스템 설계·설치·유지관련 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7.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 **개념** : 폐목재, 톱밥, 수피, 입목 등 임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및 압축하여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A02040(임업 관련 서비스업), C16299(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5121(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대표품목** : 목재폐기물·톱밥 등 산림부산물을 분쇄, 건조, 열성형과정을 거쳐 목재펠릿으로 제조하여 농산촌의 친환경에너지 대체연료로 보급하고, 동 펠릿을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보일러 등 제조시설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4401.30.0000(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403.10(보일러)

□ **기타사항**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림바이오매스(펠릿) 친환경 연료화를 위한 보일러 등 연소기 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기업

* 임지로부터 바이오매스 생산 및 공급 회사에 대상 기업, 목재펠릿등 고형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설비 제조 기업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8. 청정석탄에너지

□ **개념** : 저급탄 원료의 무공해 가스화 기술로 생산된 합성가스를 CO2 저감 공정을 통해 청정 액화연료(경유 등), 청정가스, 메탄올, Naphtha 등 다양한 화학연료로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대표품목** :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702(갈탄),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8414(가압, 가열 기능의 반응기)

□ **기타사항** : '태양전지' 참조

1-9. 대용량 전력저장 장치(ESS)

□ **개념** : 리튬이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이차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

2. 탄소저감에너지

2-1.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CCS)

□ **개념** :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를 포함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B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B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C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413(철강관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7(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제조업), D352(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M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M72923 (지질조사및탐사업)

□ **대표품목** : 연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수송선, CO2 저장 플랜트,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8404.10.4000(가스회수기), 3907.40.0000(폴리카보네이트),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청정기)

□ **기타사항 :** '태양전지' 참조

2-2. 원전 플랜트

□ **개념** : 상용원전의 일부 미자립 기술 국산화 및 독자적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 개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D35111(원자력 발전업)

□ **대표품목** :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스마트 원자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태양전지' 참조

2-3. 셰일가스

□ **개념** : 비전통가스는 발견되는 지층에 따라 분류되는데,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3. 고도물처리

3-1.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 **개념** : 막여과(Membrane Filtration)란 막(Membrane)을 여재로 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9175(액체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 **대표품목** :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기타사항**

○ 분리막 제조,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업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환경부)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3-2.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 **개념** :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중 유해성 물질의 용출(溶出)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2211(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 C2413(철강관제조업), C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7214(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C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 **대표품목** : 펌프류, 밸브류, 파이프(철계열 및 비철계열)류, 유량계류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917(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3917.20 (경질의 관·파이프 및 호 스), 3917.31(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7303.00(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철강제 [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411(동제의 관), 8481(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9026(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3-3.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 **개념** :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A01411(농업용수 공급),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D3602 (산업용수 공급업), E3701(하수 및 폐수 처리업)

□ **대표품목** :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MBR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기타사항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3-4. 먹는샘물

□ **개념** : 먹는샘물 산업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 산업

*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201.10.0000(광수와 탄산수)

□ **대표품목** : 먹는샘물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 C11202(생수생산업)

□ 기타사항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 생산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 먹는샘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5. 해양심층수

□ **개념** : 청정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및 탈염 등의 과정을 거쳐 먹는물, 음료, 주류, 식품, 농수산물, 그리고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11202(생수 생산업), C111(알콜음료 제조업), C10(식료품 제조업), C2043(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D35119(기타 발전업), D353(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표품목** : 먹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소금, 두부, 김치, 제과 등), 해양심층수로 제배된 농수산물,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한 화장품, 기능성음료, 주류, 해수냉난방시스템, 온도차 발전시스템

□ **고려사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인가 등을 갖춘 기업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해양심층수 이용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4. LED응용

□ **개념** :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TR, 유사 반도체 소자), C26219(기타 평판디스플레이), C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실장기판 제조업), C26322(컴퓨터 모니터), C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C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Eco LED(고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LED 스마트 모듈(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LED 감성/ 웰빙 조명(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41.40.1000(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8541.40.2090(기타(발광다이오드 중 레이저소자 제외)), 8531.80(기타의 기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가 결합된 표시반)), 8543.90.9010(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5. 그린수송시스템

5-1. 그린카

□ **개념** :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82(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C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C29174(기체 여과기 제조업),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C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C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C30399(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C32011(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C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702(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기타사항**

○ 자동차(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ISO/TS 16949, ISO 14001, Single PPM 인증업체 등 품질/환경 인증기업

5-2. 선박·해양시스템

□ **개념** :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선박.해양 시스템과 해양레저선박/장비를 비롯한 유망 조선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901.10.0000(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 8901.20.0000 (탱커), 8901.30.0000(냉동선), 8901.90(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5.10.0000(준설선), 8905.20(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90(기타(조명선, 발전선, 시추선, 부선거 등)),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기타사항**

○ 조선해양(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5-3. 첨단철도

□ **개념** : 첨단철도차량산업(Electric & Machinery)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도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31201,31202(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별 제조업)

□ **대표품목** :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601(철도용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 8602(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8603(자주식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8605(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등),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8(철도 또는 선로용 장치물 등)

□ **기타사항**

○ 첨단철도(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6. 첨단그린도시

6-1. U-City S/W

□ **개념** : U-City S/W 산업은 첨단그린도시의 관리운영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도시특성 및 시장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시스템S/W로 구분함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대표품목** : U-City통합플랫폼S/W, U-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S/W, U-도시교통서비스시스템S/W, U-도시안전(방범,방재)서비스시스템S/W, U-도시물순환관리시스템S/W, U-도시탄소. 에너지관리시스템S/W, U-도시환경관리시스템S/W, U-도시물류시스템S/W, U-도시행정 지원(원격근무 포함)시스템S/W, U-City통합미들웨어, U-City건설공정관리S/W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 **고려사항**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된 기업

6-2. U-City IT H/W

□ **개념** :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각종 IT장비 및 부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6221(인쇄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 **대표품목** : U-City통합단말기, 미생물연료전지기반 BOD센서, U-City 코어게이트웨이, U-City 무선 AP, U-City 센서네트워크 AP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PDA), 8517(중계기, 기지국),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23.59.3000(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 (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 **기타사항**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 기업

○ 통합운영플랫폼 및 U-City단말과의 정보연동을 위한 상호연동기준 마련 및 인증

6-3. U-City IT 융합 H/W

□ **개념** :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지능형 건축자재, 지능형 토목자재 (모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3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C2399(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 지능형통풍방음벽, Water Curtain 방음벽, 지능형 벽체 모듈, 지능형 가로 바닥 모듈 등,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신호등, 미디어폴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6808(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시멘트제품,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제품), 7308(철강제의 구조물), 7610(알루미늄재의 구조물),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 **기타사항** : 'U-City IT H/W' 참조

6-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개념**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C28903(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J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대표품목** :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및 교통정보 제공단말기, 버스정보 시스템, Hi-Pass 등 전자요금지불 시스템 및 단말기, Smart-Highway 시스템 및 단말기,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및 단말기, 차세대 위성항행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71(PDA),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8525(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30(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8526(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8608(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부분품), 9006(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 9013(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 9029(속도계와 회전속도계), 9033(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 **기타사항**

○ ITS 표준인증, 품질인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 교통신기술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103조)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5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6호, 환경부고시 제2006-1호)

6-5 첨단그린도시-GIS

□ **개념** :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대표품목** :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8122(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G46510(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10(유선통신업), J61220(무선통신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M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2(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M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21(측량업), M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 M73909(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72924(지도제작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4905(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6(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9014(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 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기타사항**

○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응용서비스를 컴퓨터와 기술인력이 결합하여 시장에서 지리공간정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GIS와 관련 기업

○ 정부 공공분야 GIS 확산.시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GIS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GIS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기업, GIS 관련 정부/단체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

6-6. 첨단그린도시-그린홈

□ **개념** :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저에너지·친환경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산업

□ **대표품목** :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5111(창 및 관련제품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 C28112(변압기제조업), C29133(탭·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C29176(열교환기제조업), C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C284(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C2851(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C264(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7308.30.0000(문·창문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7419.91.0000(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 8302.41.10(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413.70.90.10(터빈펌프), 8413.70.9020(볼류트펌프), 8413.91.4000(원심펌프의 것), 8413.70.9090(펌프기타), 8414.80.9210(펌프사용동력이 74.6㎾미만인 것), 8481.80.1010(전기작동식인 것), 8481.80.1030(기타자동제어식의 것), 8481.8020(탭.코크와 트랩), 9025.90.11(온도센서), 8501.10.20(교류전동기), 8501.53.10(전동기출력이 375㎾이하인 것), 8503.00.10(전동기의 것), 8503.00.20(발전기의 것과 발 전세트의 것), 8501.53.10(발전기출력이 375㎾이하인 것), 8501.53.20(발전기출력이 375 ㎾초과 1500㎾이하인 것),

8504.21.9020(변압기용량이100kVA초과 650kVA이하인 것), 8504.22.9010(변압기용량이 650kVA 초과 1000kVA이하인 것), 8512.20.10(조명용기구), 9405.60.30(형광램프의 것), 7011.10.0000 (전등용의 것), 8504.40.9091(전기통신용기기의 것)

Ⅱ. 첨단융합 산업

7. 방송통신 융합산업

7-1.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 **개념** :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포괄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10(유선통신 장비 제조업), J61210(유선 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F42321(일반 통신공사업), F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대표품목** :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 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 차세대 네트워크와 연계된 융·복합 기술 보유 업체

○ 차세대 네트워크(BcN, HN) 핵심기술 보유업체

○ Giga인터넷 핵심기술 보유업체

○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및 정보보안 기술 개발 업체

○ 방송통신 융합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보유 업체

7-2. 차세대 무선통신

□ **개념** :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2(이동전화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 무기 제조업), C26521(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C26529(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820(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1220(무선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C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

□ **대표품목** :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 통신 단말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계 ; PDA), 8529(부분품),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참조

7-3. 방송통신미디어

□ **개념** : DTV, DMB, I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및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등을 포함)

□ **대표품목** : 실감DTV방송(3DTV, UHD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차세대 IPTV(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1(방송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0(라디오, 녹음 및 재상기기제조업), J60110(라디오 방송업), J60210(지상파방송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J59114(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기타사항**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참조

8. IT융합시스템

8-1. IT융합

□ **개념** : 주력산업에 IT를 융합.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F411(건물 건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Q861(병원),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대표품목**

○ 지능형 그린자동차 :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스템 기술, IT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 DIGITAL 선박 :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항해정보 시스템(INIS)

○ 웰페어 융합 플랫폼 :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기계류, 로봇포함), 85(전자기기류), 86(선박류), 87(자동차류), 88(항공기류), 89(선박류), 90(측정장비, 의료기기류)

8-2. RFID/USN

□ **개념** : RFID와 USN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RFID/USN 기기, 서비스 및 응용에 관련된 가치사슬 상의 모든 player를 포함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 업), C26221(인쇄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9(기타 주 변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999(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대표품목** :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59.3000(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3. 차세대 반도체

□ **개념** :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전장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로 시스템의 고성능·고기능화, 경박단소 및 저전력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1(반도체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

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8456·8479·8424(반도체 제조장비 등)

8-4. 차세대 디스플레이

□ **개념** : 기기의 정보를 사용자(End user)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화면표시장치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21(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OLED 조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73.10(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522.90(기타),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9(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43(기타의 전기기기), 9001(광섬유와 광섬유다발), 9013.80(기타의 기기), 9013.90(부분품과 부속품), 9017.90(부분품과 부속품), 3701(평면플레이트(플라즈마용 등), 7005(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 7006(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로서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9. 로봇 응용

□ **개념** : 로봇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및 타 분야의 로봇화로 파생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219(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C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3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대표품목**

- ○ 라이프케어 로봇 :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봇
- ○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 팩토리로봇, 나노-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 ○ 지속가능 사회안전로봇시스템 :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 ○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 도우미 로봇
- ○ 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술 로봇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28(기능별 로봇), 8479.50(산업용 로봇), 8486(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7류(무인자동차), 88류(무인항공기)

□ **기타사항**

○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 지경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시장검증 및 시범서비스사업 참여기업

10. 신소재 . 나노융합

1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개념**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차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소재

□ **대표품목** :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1류(기타의비금속), 82류(비금속제공구,스푼·포크), 83류(각종비금속제품)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39(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2(1차 비철금속 제조업), C243(금속 주조업), C25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C259(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3(자동차 부품 제조업)

□ **기타사항**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 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 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 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10-2. Ionic Liquid(IL) 소재

□ **개념** : Ionic Liquid 소재는 고온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녀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대표품목** :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재, 표면 마찰저감 소재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3. 나노탄소 융합소재

□ 개념 : 나노탄소 융합소재는 나노기술 개발 전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 나노소재로 에너지, 환경, 전자.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한 소재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 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대표품목** :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볼, 탄소 (흑연) 나노 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4. 기능성 나노 필름

□ **개념** : 기능성 나노필름은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필름으로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302(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 제조업), C20431(계면활성제제조업), C20491(사진용 화학제품, 감광재료제조업), C205(화학섬유 제조업), C262(전자부품 제조업)

□ **대표품목** :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 / 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33(각종 화학생산품), 85류(전기기기.TV.VTR)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5.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개념** : 나노융합 바이오머신은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 크기의 시스템 으로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에 적용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72(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대표품목** :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류(의료용품), 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1-1. 바이오 의약품

□ **개념** :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대표품목** :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3(의약품,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3004(의약품,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 **기타사항**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용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 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 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 및 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11-2.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 **개념** :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대표품목** :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동물, 단백질 치료제, 이종장기 생산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3(의약품), 3004(의약품),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3.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 **개념** :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물리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제품

□ **대표품목** :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 섬유/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22(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4.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 **개념** :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 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대표품목** :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6(의료용품),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7(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5.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 **개념** :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 하는 조기진단/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 **대표품목** :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 의약품 자동합성장치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6(의료용품),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6.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개념**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고령화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개발 및 제품 개발

□ **대표품목** :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욕창방지 bed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C27193(의료용 가구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6(의료용품),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7. 화합물 제약

□ **개념** : ①**신물질 신약 :** 암 질환, 뇌·신경질환,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감염성질환, 고령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신약

②**혁신형 개량신약 :**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 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신약

11-8. 천연물 제약

□ **개념** : ①**천연물** :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②천연물 성분 :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

③천연물신약 :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④천연물과학 :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12. 고부가 식품산업

□ **개념** : 고부가 식품이란 BT.IT.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일컬으며, 최근 식품안전 및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 기존 전통적 식품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으로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우주식품, 레저식품 등), 천연소재(화학합성물 무첨가), 개인맞춤형식품 등이 해당됨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10(식료품 제조업, 단 사료 관련 업종은 제외), C11(음료 제조업)

□ **대표품목**

○ 기능성식품 : 개인맞춤형식품, 천연첨가물, 대체식품소재, 특수목적식품 등

○ 친환경 안심식품 : 유기식품, 식품안전인자 검지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등

○ 웰빙 전통식품 : 저염화 전통발효식품, 명품 천일염, 건강기능강화 전통식품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02(육과 식용설육, 단 식용에 한함), 03(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단 식용에 한함), 04(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단 식용에 한함), 07(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단 식용에 한함), 08(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곡물), 11(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단 식용에 한함), 13(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단 식용에 한함), 15(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단 식용에 한함), 16(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당류와 설탕과자), 18(코코아와 그 조제품), 19(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501(소금, 단 식용에 한함), 2936(프로비타민과 비타민),

□ **기타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활용하는 기업

○ 국내 농수산물을 소재로 개별인정형을 받은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

○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은 기업

○ (전통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류 추천면허를 받은 기업

○ 식품명인, 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ISO 인증, GAP 인증,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HACCP,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제

○ 우수식품인증(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기업

○ 식품명인 인증,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HACCP(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지리적표시제

Ⅲ.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 **개념** :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①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②해외에 병원건설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건축과 감리, 운영 등 병원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하는 해외병원 신설·운영 컨설팅업 및 ③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u-Health로 구성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M71531(경영컨설팅업), N7521(여행사업), P85302(대학교), Q8610(병원), Q8620(의원), Q8690(기타 보건업)

□ **대표품목**(서비스)

○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Agency 등)의 유치 서비스, 외국인 환자 전담서비스 인력(코디네이터 등) 양성 서비스.

○ 의료기관 및 컨설팅 업체의 해외병원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서비스.

○ u-Health 서비스(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재활, 질환관리, 생활습관패턴관리, 방문간호원격지원, 원격복약관리, 원격정신건강관리, 원격응급의료, 예측 맞춤형의료, 출산육아관리 등).

□ **기타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체.

* 의료법(제27조 2항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u-Health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등

○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제도 의료법 (제27조 2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개념**

○ 쌍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및 전파방송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교수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과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업

○ u-러닝 관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한국의 u-러닝 표준모델 세계화 실현 및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8111(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J62022(컴퓨터 시설 관리업), J6311(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대표품목 :** LMS, KMS, ERP등 종합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Mobile 컨텐츠 저작도구 및 활용 컨텐츠, 지능형 센서, RFID, IPTV, 전자칠판, 로봇, 단말기, 지식서비스 핵심 SW(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러닝, 시험인증 등), 공개 SW, 임베디드 SW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 「이러닝 산업 발전법」에 근거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이러닝 컨텐츠 및 이러닝 컨텐츠 운용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 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15. 녹색 금융

* 향후 구체화 예정

16. 콘텐츠·소프트웨어

16-1. 콘텐츠

□ **개념** :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 **대표품목** : 방송콘텐츠(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애니메이션콘텐츠(TV용/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게임(온라인/비디오 게임, 게임솔루션 등), 융합콘텐츠(가상세계, CG, 양방향콘텐츠 등)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9111(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J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8211(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6-2. 소프트웨어

□ **개념**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표품목**

○ 공개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 지능형 인터페이스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의 인터페이스

○ 임베디드SW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 사회안전시스템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 차세대웹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17. MICE . 융합관광

17-1. MICE

□ **개념** :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행사),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유치·개최 관련산업

□ **대표품목** :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기획서비스업, 국제회의장치사업, 국제회의공연이벤트업, 국제 회의시설업,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업, 전시시설사업, 전시주최사업, 전시장치사업, 전시용역사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H50111(외항여객운송업), H51100(정기 항공운송업), H51200(부정기 항공 운송업), I55111(호텔업), I55133(휴양콘도 운영업), M7390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N75211(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N75212(국내여행사업), N75290(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N75992(전시 및 행사대행업), P90110(공연시설 운영업), P90121(연극단체), P90122(무용 및 음악단체), P90123(기타공연단체), P90131 (공연예술가), P90132(비공연예술가), P90191(공연기획업), P90192(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17-2. 생태관광

□ **개념** :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 (세계생태관광협회)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I5511(관광숙박시설 운영업), N7521(여행사업), R9023(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　　식

【서식 10】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기업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업종(코드)*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고용창출사업 참여유형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인사분야 □ 제품·개발 분야 □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20 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사업주)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업종(코드)* :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상 업종코드

【서식 11】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성장유망산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 사업체 연혁
   -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 ○ 사업 개요
   - ○ 사업의 필요성
   - ○ 세부 성과목표

4. 사업 세부내용 :

5. 고용 창출계획
   - ○ 근로자 고용 계획
   -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 근로자 모집 방법
   -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추진 세부 일정 : 근로자채용 등

7. 기타

고용창출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1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

(앞 쪽)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계획서 신청일		사업계획서 승인일	
세부사업유형	□ 지역특화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기업 □ 전문인력채용		
승인내용	□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명	
유의사항	※ 뒷면 참조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 뒷면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확인 사항	• 사업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창출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노사합이(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인허가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3개월 이내 연장) •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변경요청은 1회에 한함 •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에 따른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55세이상 고령자등 일부는 예외로 함)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최종 이직(고용전 1년 이내 이직 포함) 당시 사업주 및 기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고용(완료)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한함)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서식 13】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 )차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서식 14】

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회차)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앞 쪽)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①사 업 장 명</td><td colspan="3"></td><td>②대표자</td><td colspan="6"></td></tr>
<tr><td>③사업장관리번호</td><td colspan="10"></td></tr>
<tr><td>④ 업 종 명</td><td colspan="10">(주생산품 :　　)</td></tr>
<tr><td>⑤ 소 재 지</td><td colspan="10">(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td></tr>
<tr><td colspan="2">⑦ 창 업 일
귀내복귀기업지정일</td><td colspan="10">년　　월　　일</td></tr>
<tr><td rowspan="3">산정기간</td><td colspan="3">사업계획 시행전 월 평균근로자수</td><td rowspan="3">승인통보서를 받은 달</td><td colspan="11">사업시행 후 월 평균 근로자수</td></tr>
<tr><td rowspan="2">고용준비기간</td><td colspan="3">1차 지원금</td><td colspan="3">2차 지원금</td><td colspan="5">3~4차 지원금</td></tr>
<tr><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r>
<tr><td>근로자수</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명</td></tr>
<tr><td colspan="3">⑧ 계획서 제출일 직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td><td colspan="3">명</td><td colspan="3">⑨신규 고용(증가) 근 로 자 수</td><td colspan="4">명</td></tr>
<tr><td colspan="3">⑩ 지원금 신청액</td><td colspan="10">원
(지원금 지급대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td></tr>
<tr><td colspan="3">⑪ 계 좌 번 호</td><td colspan="10">은행 (예금주 :　　)</td></tr>
</tab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제도도입 이후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자	월 임금총액	업무부서	근로계약기간
박○○					□ 기간의 정함 없음 □ 기간제
최○○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서 근태관리부 사본 1부
2.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1부.

【서식 15】

□ 지역특화 □ 성장유망산업 □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회차) (앞 쪽)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 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④ 업 종 명	(주생산품 :)		
	⑤ 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⑥ 창 업 일		년 월 일		
⑦ 신청 지원대상자 수		명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 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⑩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각 1부
4.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기간	임금총액	신청금액	지원제외대상 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요건, 학력요건, 자격요건
3.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지원제외 대상여부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서식 16】

고용창출지원사업 검토서(사업수행기관)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대 표 자		
	④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소 재 지				
고용창출사업유형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력요건 □ 자격요건 □ 학력요건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사업개요	사업의필요성				
	고용창출계획				
	사업추진일정				
적합성등검토내용					

【서식 17】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사업수행기관)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유형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20)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	5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역량	5	
	지원의 필요성	5	
사업 내용 (40)	사업계획서 충실성	15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	15	
	재원마련의 적절성	5	
	추진일정의 적절성	5	
고용 창출 (40)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	15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	15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5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	5	
가점(+10)			
총 점			
심 사 평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관인)

【서식 18】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사업수행기관)

(단위 : 명, 천원)

순위	기관명	사업유형	지원신청		사업계획 승인		평가점수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비고란에 선정·후보기관 여부 기재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관인)

【서식 19】

년 제 차 고용창출 지원금 검토보고서 (사업수행기관)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우선지원기업여부	■ 해당 □ 비해당
업종	(코드번호 :) 업종명 :			피보험자수	
소재지	(우편번호 :) 주 소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2. 지원금 검토내용		
수급요건	확인내용	
보험료체납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사업장 카드 참조
부정수급 지급 제한기간	□ 해당 □ 비해당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별 지원내역
임금지급	□ 해당 □ 비해당	임금대장 및 임금확인서 참조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자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별 취득피보험자 참조, 근로계약서 참조 시행규칙 제44조 3항 1조 대상자는 제외
비상근 촉탁근로자	□ 해당 □ 비해당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 해당 □ 비해당	임금대장 등 참조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	□ 해당 □ 비해당	
감원방지 기간 미준수(국내복귀기업 제외)	□ 해당 □ 비해당	감원방지 사전적발조회, 상실기간별 상실자 참조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간 전체 근로자 감원내역)
타부처 지원금 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일모아시스템 조회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 해당 □ 비해당	사업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3. 신규 채용한 대상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최종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지원대상 구분	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비해당				원

4. 월평균 근로자 증감내역 및 지원금 신청 내역(국내복귀 기업에 한함)

사업계획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사업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	신규고용(증가)근로자수	지원금 신청액
		명	명

5. 고용창출 신청 및 처리내용

구분	신청내용	검토내용
대상자 수	명	명
지급결정금액	원	원

6. 지원금 결정 내역

원

7. 검토자 의견

붙 임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1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1부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신청확인서 및 근태관리부 각 1부(국내복귀기업에 한함)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처리자 이름 :

【서식 23】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사업장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명
지 원 대상자			

지도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사업장 운영 상태 확인		
2. 지원금 대상자 본인 신분 확인		
3. 지원금 대상자의 입사일		
4. 고용창출 승인사업장 여부		
5. 감원방지기간 준수 여부		
6. 대상자의 임금대장 확인 (피보험자취득일과 실제 근로시작일의 일치 여부)		

※ 제출서류

점 검 일 자 : 2016. . .

대상(사업주)자 : (서명)

점 검 자 : (서명)

【서식 24】

사실 확인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처분, 과태료 처분 및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1. 직 장 명 :
2. 입 사 일 :
3. 전문인력장려금 대상자로 기수혜 여부 :

   * 전문인력(2회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수급자는 제외됨)

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5. 급여 수령일 :
6. 임금산정기간 :
7. 담 당 업 무 :
8. 입사하기 전 최종 이직한 사업장명과 이직일 :
9. 입사하기 전 동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제공 여부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서식 24-1】

고용창출지원금 수급시 확인사항

1.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됩니다.
2. 채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채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허위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자가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일용, 수습사원 등 어떤 명칭으로든 당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을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7.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나 임금체불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8.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비상근 촉탁 근로자,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당해 사업장에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성명 : (인)

【서식 25】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 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ㅇ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